

##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서비스 중단

### 노스스타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

2025년 3월 19일 이사회 결의안 25-04로 채택

1. 목적. 본 정책은 노스스타 커뮤니티 서비스 지구가 미납으로 인해 가정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때의 관행을 문서화하고, 지구 상수도 조례 21-05 및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116900을 시작으로 상원 법안 998호(수도 차단 보호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정책과 지구 조례, 정책 또는 규칙 간에 상충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과 캘리포니아 법률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이 우선합니다.

### 2. 보건안전법 §116908에 따른 체납 및 수도 서비스 중단

A. 청구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은 해당 주택용 수도 서비스 계정을 연체로 간주합니다. 또한, 구청은 연체 계정에 대한 해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도 서비스 중단이 포함됩니다.

B.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는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최소 7영업일 전에 미국 우편국을 통해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의 고객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해당 주소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의 주소와 다른 경우,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의 주소로 "거주자" 앞으로 두 번째 통지가 발송됩니다.

C. 고객 또는 거주하는 성인과 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고,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구는 거주지를 두 번째로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주거 서비스 중단 통지와 미납으로 인한 주거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구의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3. 특수 상황.

A.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이 수도 요금에 대해 구청 또는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정 또는 법적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청은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B. (i)부터 (iii)까지 나열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청은 미납을 이유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며, 총괄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고객에게 1) 미납 잔액 분할 납부, 2) 대체 납부 일정, 또는 3) 일시

납부 유예를 제안하고, NCSD 수도 조례 21-05 시행 조항(12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납부 옵션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088조(b)항(1)(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 서비스 중단이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주치의의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ii) 고객은 구청의 정상 청구 주기 내에 주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적 사회보장소득/주 보충 지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구청의 정상 청구 주기 내에 주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고객은 구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납부 연기 또는 감액 계획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c. 고객은 1년 내에 2회 이상의 납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d. 고객이 본 조항에 명시된 납부 약정 중 하나를 이행하고 미납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자금(자금 부족, 계좌 폐쇄 등)으로 인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해당 건물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최종 단수 통지서를 게시한 후 5영업일 이내에 가정용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서만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i) 고객이 60일 이상 연체 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납부 연기 또는 감액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ii) 고객이 연체 요금에 대한 분할 상환 계약, 대체 납부 일정, 또는 납부 연기 또는 감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주거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연체 요금 납부 옵션.

A. 온라인 납부. 고객은 [www.northstarcسد.org](http://www.northstarcسد.org)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Pay My Bill(내 요금 납부)" 링크를 선택하여 신용카드 또는 ACH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를 위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B. 미국 우편 납부. 고객은 청구서 하단을 수표, 우편환 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Northstar Community Services District, 900 Northstar Drive, Truckee, CA 96161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C. 직접 납부. 고객은 NCSD 행정 사무소(900 Northstar Drive, Truckee, CA 96161)에서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C. 전화 납부. 고객은 NCSD 고객 서비스(1-530-562-0747)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또는 ACH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 체납 요금 징수 옵션

A. 정부법 §61115(a)(3)(C)에 따라, 구는 고객이 요금을 미납할 경우 최대 10%의 세율로 벌금을 부과하고, 요금 미납 시 월 1%의 추가 벌금과 기본 벌금을 부과합니다.

B. 정부법 §61115(b)에 따라, 구는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명부에 있는 체납 요금 및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C. 정부법 §61115(c)에 따라, 이사회는 총괄 관리자 또는 지명인에게 플레이서 카운티 등기소에 납부해야 할 기소금 및 벌금의 금액과 해당 기소금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명시한 증명서를 등록함으로써 기소금 및 벌금을 회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증명서가 등록되면, 기소금 및 벌금의 금액은 체납 재산 소유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구성하며,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6.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

A. 고객이 서비스 또는 청구서의 정확성 또는 기타 요금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NCSD 수도 조례 21-05 시행 조항(제1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객은 총괄 관리자와 만나 상황을 논의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B. 고객이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NCSD 수도 조례 21-05 시행 조항(제1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 이사회는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사회가 항소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구청이 고객에게 해결 기간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미조치는 요청된 조치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고객 지원 및 지원. 고객이 공공요금 청구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시면 NCSD 고객 서비스(1-530-562-0747)에 문의하시거나 캘리포니아주 트러키 노스스타 드라이브 900번지(우편번호 96161)에 위치한 구청 행정 사무실을 방문하십시오. 고객은 청구서 뒷면에서 납부 옵션, 납부 기한 및 벌금, 수수료 및 요금, 그리고 청구 관련 문의 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수도 서비스 복구.

A. 구청은 고객에게 가정용 수도 서비스 복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임을 구청에 입증하는 가정용 고객의 경우, 구청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i) 정상 운영 시간 중 수도 서비스 재연결 수수료는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또는 실제 재연결 비용이 50달러 미만인 경우 실제 재연결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비운영 시간 동안 주거 서비스 재연결에 대해, 교육구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재연결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비운영 시간 동안 실제 재연결 비용이 150달러 미만인 경우 해당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ii) 운영 시간 중 재연결 최대 금액인 50달러와 비운영 시간 중 150달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교육구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산정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헤이워드 지역을 사용합니다.

(iii) 12개월마다 연체료에 대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B. 구는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보충적 사회보장소득/주정부 보충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수급자이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해당 주거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보고 요건. 보건안전법 제116918조에 따라, 구는 매년 납부 불능으로 인한 주거 서비스 중단 건수를 구 웹사이트 및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0. 기타 고객 위반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고객의 무단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정책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구의 권한을 제한, 제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저해하지 않습니다.

11. 정책 및 기타 자료 이용 가능 여부. 본 정책은 [www.northstarcasd.org](http://www.northstarcas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안전법 §116906에 따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해당 언어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입니다. 지구 상수 조례 21-05는 지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